

닭 뉴캐슬병 방역시책

본고는 금년들어 확산되고 있는 뉴캐슬병 확산방지 및 근절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2-23일 경남지역과 전남지역 양계인들을 위해 본회가 주최하여 농림부가 후원한 '양계농가 닭질병 방역교육세미나'에서 농림부 축산국 가축위생과 김창섭 사무관이 발표한 정부의 '뉴캐슬병 방역시책' 내용을 발췌·게재한 것이다. - 편집자주 -

1. 닭뉴캐슬병 발생 동향

1) 금년들어 6.10까지 40건, 449천수가 발생하고 있으며, 지난해 동기대비 25배 수준으로 발생이 대폭 증가

○ 연도별 발생현황 : (1999) 16건, 434천수
→ (2000. 6. 10) 40건, 449천수

2) 동 질병은 1927년부터 국내에서 발생하고

있으며 주로 환절기인 4~5월에 다발하고 3~4년 주기로 집중 발생

○ 발생 증가사유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양계업계의 불황으로 부화장과 농가의 예방접종 및 차단방역 관리 소홀에 기인함

※ 참고로 금년도가 발생 주기로 집중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

3) 특히 동 질병은 살처분 보상금 지급대상

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농가가 가축방역기관에 발생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인근 농가 및 타 지역으로 확산될 경향이 많음

○ 발생 신고시 해당농장에 대

표1. 닭뉴캐슬병 발생 동향

(단위 : 호, 두수)

연도	구분	계	시·도별									
			대구	인천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
2000.	건수	40	2	1	7	6	8	5	5		6	
	두수	448,754	704	4,000	37,700	38,350	34,900	122,800	125,400		84,900	
1999.	건수	15					2	3	3	7		
	두수	418,300					870	32,430	56,500	328,500		

해서 소독, 살처분 명령 및 이동제한 등 방역규제 조치로 농가의 신고 은폐가 있음

※ 보상금 미지급사유 : 예방접종으로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농가의 방역관리 소홀 우려



4) 최근 뉴캐슬병 발생 농가 역학조사 결과(수의과학검역원)

○ 조사시기 및 지역 : 2000. 5월, 7개도 86 농가(육계51, 산란계 35)

○ 조사결과

- 뉴캐슬병 의심닭의 닭 도축장 조기출하로 차량 등을 통한 확산
- 부화장의 분무접종 실시율의 저조(42%)
- 육계농가의 경우 추가접종 미실시 및 음수 접종방법의 미흡
- 산란계의 면역지속능력의 조기 저하에 따른 산란율 저하
- 육계농가의 추가접종용 분무기 보유율 저조

2. 그동안 닭 뉴캐슬병 방역대책 추진 현황

1) 기본방향

농가 자율방역 추진을 원칙으로, 정부는 부화장의 예방약 공급, 혈청검사, 예방접종 지도 및 교육·홍보, 제도개선 등 추진

2) 추진시책

- 부화장에 대한 예방약 지원 및 예방접종 실시 지도·점검
 - 예방약 공급 : 1997년부터 부화장에 매년 3억수분(국비 1,500백만원)
 - 부화장의 예방접종 실시 및 자동분무접종기 설치 지도
- 닭도축장에서의 혈청검사 실시
 - 매년 20만건의 혈청검사 실시후 농가에 결과 통보, 방역관리 지도
- 제도 개선(1997~1999)
 - 가축수송차량등에대한소독실시요령 : 도축장에서 차량소독 의무화
 - 닭뉴캐슬병예방접종실시명령 제정 : 접종방법, 과태료 처분기준 등
 - 축산농가 소독시설(장비) 설치 의무화 :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(2000. 1)

3) 최근의 방역조치 사항

- 5. 1/ 5. 11 : 시도 등에 부화장 점검, 예방 약 품질검사, 농가 방역 홍보 강화 지시
- 5. 13 : 뉴캐슬병 발생주의보 발령(검역원)
- 5. 16 : 국무회의시 뉴캐슬병 발생 및 방역 추진상황 보고
- 5. 17 : 발생 미신고 및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과태료 처분 강화 지시
 - 발생시 역학조사 철저 및 관련업계(사료, 약품 등) 종사자 교육 등
- 5. 22 : 방역관리 위반농가 제재조치 철저 재지시(시도, 검역원)
- 5. 24 : 관계기관 방역대책회의 개최
 - 농림부, 시도, 검역원, 대한양계협회, 축협중앙회, 사료협회 등
- 5. 29 : 닭뉴캐슬병 방역대책 시달 및 후속 조치사항 이행 철저 지시
 - 방역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별 방역 역할분담 시달
- 6. 15 : 동물약품협회 및 검역원에 닭 뉴캐슬병 예방약(B, 또는 라소타) 생산확대 및 조기 검정 조치
 - 일선에서 분무예방약 물량은 충분하나 2차 음수용 예방약 부족 발생

3. 향후 추진계획

- 1) 동 질병의 방역 추진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방역관리 위반자(예방 접종 미실시, 발생시 미신고 등) 색출과 강력한 제재조치를 실시함과 동시에 예방약 공급 등 예산지원 확대 병행 추진
 - 뉴캐슬병 방역은 기본적으로 농가 자율방역체제로 추진하되, 정부는 예방약 공급, 농가

교육 및 혈청검사를 통한 방역조치 위반자에 대한 규제강화

2) 부화장 예방약 추가 공급 및 농장 예방약 신규지원 추진

- 부화장의 예방약 100% 공급을 위하여 소요 예방약의 추가 지원
 - 지원시기 : 2000. 6월중 (부족량 파악중)
 - 재 원 : 축산발전기금 또는 긴급방역재료비(농특회계) 활용
 - 농장 2차 접종을 위한 예방약 공급은 내년 예산에 반영, 지원방안 검토
 - 기획예산처와 협의, 내년 사업비 증액(15→30억원 수준) 확보 추진

3) 부화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 실시 (시도 및 검역원)

- 6월중 부화장의 자동분무접종기 설치 실태 일제점검 실시
 - 자동분무기가 없는 부화장은 경고처분 및 분무기 구입 지도

※ 미신고 부화장에 대하여도 일제 단속을 실시, 폐쇄 등 강력 조치

- 7월초 경고받은 부화장을 재점검, 미설치시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, 과태료(300만원이하) 처분 및 중점 점검대상으로 관리

4)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색출 및 규제 강화 (시도 및 검역원)

- 농가 서비스 차원의 현행 혈청검사 방법을 개선, 혈청검사 결과 항체음성 농장에 대하여는 과태료(300만원이하) 처분 조치
 - 미실시농가 판정기준, 검사절차 등 세부사

항은 검역원에서 보완

○ 혈청검사는 닭도축장 또는 농장에서 채혈 실시

- 닭도축장(육계)은 수시, 농장(산란계)은 분기 또는 반기별 1회이상 실시

5) 발생 미신고 관계자에 대한 조치 강화(시도)

○ 발생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, 수의사, 사료·동물약품 판매업자에 대하여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의거, 처분 철저

- 수의사 :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

- 농가 또는 운송업자 :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

- 동물약품 또는 사료판매자 : 300만원이하

의 과태료

○ 대한수의사회 등 관련단체에 동 사항을 통보, 회원에게 홍보 협조

- 7월부터는 전염병 발생 미신고자에 대하여 철저한 규정 적용

○ 농가 홍보를 통해 자발적이고 신속한 신고 분위기 조성

6) 예방접종 프로그램 및 예방약 품질검사 강화(검역원 및 협회)

○ 검역원에서 정확한 표준접종 프로그램을 재검토·보완 제시

- 유통중인 예방약의 품질 및 효능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농가에게 홍보

- 최근 일부 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“종란 접종” 방법 도입방안 검토 **양계**

자동화 계사 청소

이젠, 저렴한 비용으로 영창이 책임지겠습니다.

- ① 저렴한 비용으로 계사 청소의 대중화
- ② 초고압 세척으로 질병 억제효과 (사용 압력 100~200bar)
- ③ 빠른 청소로 계사 활용을 극대화

장비임대 가능 ⇨ 자가 청소 가능 ⇨ 경비 절감

♣ 생산품목

- 급 이 기(고르계형)
- 계 분 벨 트
- 집 란 장 치

영 창 축 산 기 계

사무실 : 경북 칠곡군 왜관읍 아곡리 309
 전 화 : (054)975-1301~2
 휴대폰 : 011-9676-3722